"변화를 선도하는 강남,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"

등록번호	복지정책과-4884
등록일자	2016.2.4.
결 재 일 자	2016.2.5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통합관리팀장	복지정책과장	복지문화국장	
양지예	강민수	김구연	전결 02/05 김효길	
협조자				

2016년 기초주거급여 대상자 연간조사 계획



조사기간 : 2016. 1월 ~ 12월

■ 조사대상 : 강남구 기초주거급여대상자 총6,057가구/9,915명

(2015.12월말 기준)

● 조사내용

- 주거지, 주거유형 및 임차료 등 주거변동사항
- 기초주거급여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·재산, 인적변동사항

▲ 조사방법

- LH 주택조사의뢰 및 결과회신반영
-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확인
- 안내문 발송 및 상담을 통한 관련서류 징구 또는 본인신고

◉ 결과처리

- 기초주거급여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액 변경
- 부정수급자 보장비용징수 요청 등 행정절차 수행

2016. 2.

강 남 구 (복지정책과)

【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】

검토분야	확인 및 적시사항
관련 규정 및 근거	현행 관련 법, 시행령, 조례, 규칙,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 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제1항, 동법 시행규칙 제37조, 주거급여법 제11조
추진 경위	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? • 기초주거급여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 적정성 확인
예산 사항	산출 근거 및 기준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 • 해당없음
수 혜 자 및 범위	이 업무(사업)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? • 기초주거급여대상자
분 야 별 검토사항 [계속: O] [신규:]	이 업무(사업)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? ① 관련부서 협조
타 기관 사 례	타 구 사례를 파악, 비교해 보았습니까? • 해당없음
전 문 가 자 문	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? • 해당없음

2016년 기초주거급여 대상자 연긴조사 계획

기초주거급여대상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추진일정에 따라 연간조사를 실시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

I 추진방향

- 기초주거급여대상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
- 확인조사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부정수급 방지

Ⅱ 추진개요

- **조사기간** : 2016. 1월 ~ 12월
- **추진근거**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,

「주거급여법」 제11조

■ 조사내용

- 주거지, 주거유형 및 임차료 등 주거변동사항
- □ 기초주거급여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・재산변동사항
- 사망・군입대・말소・출입국기한만료・교정시설입퇴소 등 인적변동사항

■ 조사방법

- LH(주택조사전담기관) 주택조사의뢰 및 결과반영
- 사회보장정보시스템(행복e음)을 통한 공적자료 확인
- 안내문 발송 및 상담을 통한 관련서류 징구 또는 본인신고

■ 결과처리

- 기초주거급여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액 변경
- 부정수급자 보장비용징수 요청 등 행정절차 수행

\coprod

2016년 주요 변경 내용

■ **주거급여수급자 선정기준** : <u>기준 중위소</u>득 43%

전년대비 기준 중위소득 4% 인상에 따라 2016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액 상향

■ 2016년 보장가구원수별 기초주거급여 선정기준액 및 지원 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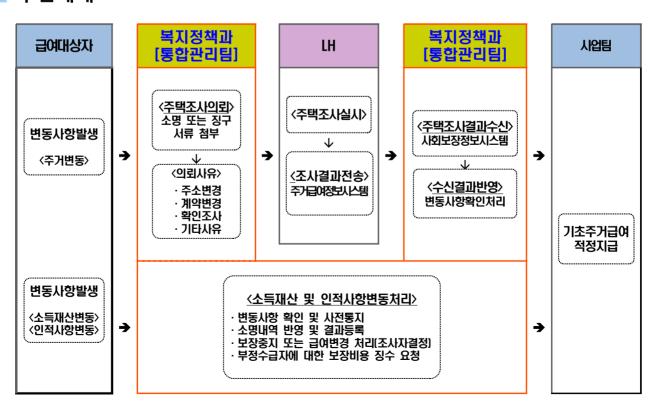
(단위 : 원)

구 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	7인가구
2015년 기준중위소득 43%	671,805	1,143,884	1,479,787	1,815,689	2,151,592	2,487,494	2,823,397
주가급여 선정기준 (2016년 기준중위소득 43%)	698,677	11,89,640	1,538,978	1,888,317	2,237,656	2,586,997	2,936,333
지원 수준 (2016년 1급지 기준임대료)	195,000	225,000	266,000	307,000	317,000	69,000	369,000

IV

세부추진계획

■ 추진체계



■ 조사시기 및 일정

구 분	주 요 내 용	비고
상시확인조사	 사회보장정보시스템(행복e음)에 의한 변동사항 상시처리 주거변동: LH주택조사결과회신반영 인적변동: 사망, 군입대, 말소, 출입국기한만료, 교정시설입퇴소 등 인적변동에 따른 조사자결정처리 소득재산변동: 소득인정액변동 관리 등에 따른 자격 및급여변동확인 	
정기확인조사 (제12회,13회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)	· 건강보험보수월액, 재산세 관련 정보 등 공적자료로 입수 가능한 소득재산 정보 및 금융재산조회 결과 반영	매년 상·히반기로 나누어 <u>연2회</u> 조사
단주기확인조사	· 공적자료 : 상시근로소득(건강보험, 국민연금), 주요연금급여 (국민연금, 4대 특수직역연금), 취득세 · 대상자 : 상시근로소득 대규모변동자 (50%이상 증감자), 연금급여변동자, 취득세납부자	※ 2016년 1월부터 시행 정기확인조사 기간을 제외한 매월 실시원칙

■ 조사방법

- LH주택조사의뢰 및 수시조사에 의한 조사결과회신반영
 - 주거지 변동, 주거유형,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결과를 회신받아 반영처리 후 수급자격 및 급여액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는 보장중지 및 급여변동 처리
- 사회보장정보시스템(행복e음)에 의한 조사
 - 공적자료의 변동으로 수급자격 및 급여액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 보장중지 및 급여변동 처리
 -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소득재산 조회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관련 자료 제출요구(시행규칙 제35조)
 -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하도록 하고 입증자료 제출시 수정결과 적용
- 소득파악이 곤란한 자에 대한 소득 조사
 - 지출실태조사표 작성 및 소득출처 파악
 -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제출을 통한 본인신고소득 반영
 - 보장기관확인소득 부과여부 판단

■ 조사결과의 적용

- 수급자의 자격, 급여의 종류 및 급여액 등 변경
 - 변동사항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확인된 당월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
 - 단, 기존 신고된 자료의 변동을 제외한 신규발견소득, 취업, 재산취득과 가구원 변동 등에 따른 자료는 변동시점 익월부터 적용
- 보장결정요청
 - 자격중지 : 선정기준 부적합대상자에 대한 자격중지 조사자결정 후 보장결정요청
 - (재) 책정 :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개별급여별 선정기준 적합대상자에 대해 통합조사팀의 조사절차를 생략, 통합관리팀의 직권으로 보장책정요청 (단, 최초 통합신청자에 한함)
- 부정수급자 확인시 사업팀에 통보

Ⅳ 기타사항

- 연간조사를 통한 수급자의 급여액 및 자격변동발생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안내 철저
- 기타 제반사항은 2016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, 2016년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안내 및 2016년도 주거급여 사업안내 지침에 의거 처리

붙임: 기초주거급여대상자 동별 현황 1부. 끝.